## 석면조사 결과보고서



### 배재대학교자연과학관 석면조사

2014. 02.



## ▶scsc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주|

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56 201호

TEL: 1661-5404 FAX: 042)524-1789

### 목 차

- 1. 석면조사 종합결과표
- 2. 석면조사 개요
- 3. 석면함유자재 균질부분 함유면적 집계표
- 4.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- 5. 시료분석결과서
- 6. 조사기관 지정서 사본

### 1.석면조사 종합 결과표

### 1.조사현황

<b>₩</b> .Τ.L	건축물소재지	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0-44				
현장	의뢰처(소유주)	배재대학교			TEL	042-520-5114
조사대상구분	☑ 건축물	270	☑ 설비[파이프,보온재,개스킷,패킹재,실링재 등]			킷,패킹재,실링재 등]
용도 및 구조	■ 주용도 :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■ 구조 :철근콘크리트구조					
조사목적	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지도용			becse		
조사책임자	박준근 - 대기환경	건물연면적			10,702.25 m²	
조사자	박기현 - k.s13-87				10.700.05 m²	
분석자	안은지 - 분석학사		조사연면적			0,702.25 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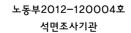
### 2.석면조사결과

종류	석면함유의심자재	분석결과	석면종류 및 함유량	시료수	석면함유면적	
TI U TII	아스팔트슁글	불검출		3	_	
지붕재	슬레이트	검출 🖯 🕦	10%	1	17.16	
	뿜칠	불검출	_	11	_	
ᅯ자ᆌ	석고보드	불검출	-	1	_	
천장재	pscsc 흡음텍스	불검출	-	1	scsc –	
2.0	텍스	검출	4%	10	484.40	
HI TII	밤라이트	검출	10%	8	170.14	
벽체	콘크리트	불검출	-	1	_	
바닥재	비닐계타일	불검출	-	6	_	
וון אַנ דוו	보온재	불검출	-	3	_	
배관재	개스킷	불검출	esc <u> </u>	1	_	
	671.70 m²					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,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의하여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14 년 02월 11일

##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 주





### 2.석면조사 개요

#### 가. 조사개요

배재대학교 자연과학관 석면조사는 **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,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21조** 에 근거하여 현 장조사와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.

#### 나. 조사목적

- ① 『석면안전관리법』시행으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 건축물 대하여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
- ② 조사된 석면사용 실태 및 관리현황을 근거로 석면지도 작성하고 석면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#### 다. 조사방법

석면조사는 "산업안전보건법" 시행규칙 제 80조의 4에 따라

- ①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사용자재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의 현황을 참고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②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 중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하여는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"고용 노동부 고시"제2012-9호 [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라 시료를 채취 및 분석조사를 하였습니다.

#### [참고]

- ①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, 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② 기관석면조사실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공사(해체, 철거, 보수, 등)진행전 또는 진행 중에 석면조사당시 구조적으로 조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역이나 노출되지 않은 부분(예> 2,3중 덧시공)에서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가 발견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(주) ☎1661-5404로 통보하여, 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.

### 라. 현장사진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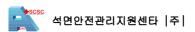


### 3. 석면함유자재 균질부분 함유면적 집계표

구분	석면함유건축자재	석면종류 (함유율)	균질구분	면적	소계		
지붕재	슬레이트	백석면 10%	외부 창고 1,2 지붕 (2*3.7*1.16)*2 할증 16%	17.16	17.16		
			4층 화장실 천장	75.61			
			3층 화장실 천장	75.61			
		W / L G	3층 301호 배양실 천장	21.76			
천장재		백석면 4%	2층 화장실 천장	75.61	484.40		
			1층 화장실 천장	75.61			
	텍스		지하 1층 102호 천장	118.8			
			지하 1층 103호 천장	41.4			
		백석면			4층 402호 벽체 9.7*2.9	28.13	
				4층 414호 벽체 7.7*2.3	17.71		
				4층 413호 벽체 9*2.3	20.7		
			4층 434호 벽체 (9*2.3)+(9*0.8/2)	24.3			
벽체		10%	3층 313호 벽체 (7.4*2.3)	17.02	170.14		
	밤라이트		2층 217호 벽체 9*2.3	20.7	_		
			2층 220호 벽체 (7.7*2.3)+(0.2*2.8)+(0.9* 2.8)	*2.3)+(0.2*2.8)+(0.9* 20.78			
			1층 105호 벽체 8*2.6	20.8			

### 총 석면함유자재면적 671.7 ㎡

- \*\* 균질지역 구분에 관한 근거 **고용노동부 고시 2012-9호 제4장 2**
- \*\* 건축물의 석면면적은 조사자의 실측에 의한 것이며 측정위치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


### 4.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
■ 『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』제28조 제1항, 『환경부고시 제2012-81호』 "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"에 따라 다음 항목의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

### 1.평가

석면함유자	₹L □	. L III = L □	점수			
재	항목	상세항목	슬레이트	텍스	밤라이트	
		비산성	1	1	1	
	물리적 평가	손상상태	1	1	1	
		석면함유량	1	1	1	
		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	0	0	0	
   슬레이트	진동,기류,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	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	0	0	0	
텍스 밤라이트		누수에 의한 손상가능성	1	0	0	
		유지보수형태	0	1	0	
		유지보수빈도	0	1	0	
		상주인원 또는 거주자 수	0	1	1	
	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	구역의 사용빈도	0	2	2	
		구역의 1일 평균사용시간	0	2	2	

### 2.결론

석면함유자재	점수	위해성등급
슬레이트	4	· 사 임
텍스	10	· 사 음
밤라이트	8	암

### ■ 관련근거-별첨

### 5.시료분석결과서

# 분 석 결 과 서

■고형시료 중 석면 문서발급No : ASC140106-01~46

G 7 6 7/1	I 중 약한			조시크i	∃NO · AS	6C14U1U6-U1~46
	270	<u>C</u>	의뢰처 정보		- FR.	
	의뢰처	배재대학교			TEL	042-520-5114
	용역명	배재대학교 지	├연과 <mark>학관 석면조사</mark>	10		
	시료채취장소	대전광역시 서	H구 배 <mark>재로 150-44</mark>			scsc
#SCSC			분 석 결 과		분석연구	원: 안 은 지
시료 번호	채취위치	자재종류	분석 석면	결과 비석면성	4 은	법적기준 (중량대비1%이하)
No.1	옥상 지붕	아스팔트슁글	ERO 불 검 출	51 120	<i>37</i> 1	- (8 8 dia) (80) (0)
No.2	옥상 지붕	아스팔트슁글	불 검 출			-
No.3	옥상 지붕	아스팔트슁글	불 검 출		SCSC	-
No.4	옥상 옥탑 천장	뿜칠	불 검 출			-
No.5	옥상 옥탑 천장	뿜칠	불 검 출			-
No.6	옥상 옥탑 천장	뿜칠	불검출			-
No.7	434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	석면 1% 초과
No.8	430호 앞 복도 천장	뿜칠	불 검 출			-
No.9	430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	-
No.10	430호 천장	석고보드	불 검 출			-
No.11	4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
No.12	413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	석면 1% 초과
No.13	414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	석면 1% 초과
No.14	4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
No.15	4층 412호 벽체	콘크리트	불 검 출			-

시료	퀴로 이 뒤	コルスコ	분석	결과	법적기준
번호	채취위치	자재종류	석면	비석면섬유	(중량대비1%이하)
No.16	402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		석면 1% 초과
			10 % 백석면(Chrysotile)		
No.17	301호 배양실 천장	텍스	4 %		석면 1% 초과
No.18	302호 천장	뿜칠	불 검 출	, TA	-
No.19	3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
No.20	316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C	석면 1% 초과
No.21 <sub>scs</sub>	3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
No.22	201호 천장	뿜칠	불 검 출		-
No.23	2층 복도 천장	뿜칠	불 검 출		-
No.24	221호 천장	뿜칠	ERO 불 검 출	<b>)</b>	-
No.25	329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<b>→</b> scsc	-
No.26	221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,m	-
No.27	112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-
No.28	2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
No.29	2층 홀 천장	흡음텍스	불 검 출		-
No.30	2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
No.31	220호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석면 1% 초과
No.32	217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석면 1% 초과
No.33	2층 복도 천장	뿜칠	불 검 출		-
No.34	1층 복도 천장	뿜칠	불 검 출		-
No.35	125호 천장	쁌칠	불 검 출		-
No.36	125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-
No.37	1층 화장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
No.38	1층 강당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_
No.39	1층 창고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
No.40	105호 벽체	밤라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석면 1% 초과

시료	레베이크	테치이키 피피조르		분석결과			
번호	채취위치	자재종류	석면	비석면섬유	(중량대비1%이하)		
No.41	지하 102호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석면 1% 초과		
No.42	지하기계실 배관	보온재	불 검 출	SCSC	-		
No.43	지하기계실 배관	보온재	불 검 출		-		
No.44	지하 기계실 배관	보온재	불 검 출		-		
No.45	지하 기계실 배관	개스킷	불검출	C	-		
No.46	외부창고 지붕	슬레이트	백석면(Chrysotile) 10 %		석면 1% 초과		

### 분석방법

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시야 평가법(PLM)

- 『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 2항 ,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-9호』

ERO





##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 주



### 6.조사기관 지정서 사본

제2012-120004호

###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 관 명	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주식회사							
소 재 지	(301-807) 대전 호	(301-807)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6 (목동) 201호 (목동) 201 호						
대표자성명	송영식							
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				
지정사항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				
	대행(지정) 지역	석면조사						

### ※ 준수사항

- 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2. 6. 28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자급으로